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91호    2019. 10. 1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293호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2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2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14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884호 삼척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 17

공 람									
--------	--	--	--	--	--	--	--	--	--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9년 10월 15일

## 삼척시장

삼척시 훈령 제293호

###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추천위원회 위원들로”를 “작품수집 담당 부서장으로”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기간”으로 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추천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 부문으로”를 “전문가로”로, “전문가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문별로 덕망 있고 권위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를 “시장이 위촉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집하며 의장이 되고”를 “소집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차례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추천위원장”을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회”를 “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개정전문(안)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이하 “도계유리나라”라 한다)의 작품 수집·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장품수집 계획수립 및 대상)

-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수집대상의 범위는 학문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내·외 창작미술작품으로 한다.

## 제3조(수집방법 등)

- 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 기증, 관리전환, 공모, 예술품 디자인 등의 방법에 따른다.
- ② 수집 대상 작품은 도계유리나라 작품수집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작품을 도계유리나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 제4조(경매구입)

- ① 경매를 통하여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작품수집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수집 작품 제안권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예정 작품을 직접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위원회는 응찰예정 작품에 관한 보고서를 심의하여 응찰

여부와 응찰 시 최고 응찰가격을 결정한다.

4. 작품수집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은 낙찰된 작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구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경매에 참여한 공무원은 경매 작품구입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경매 참여 사실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집 작품의 제안)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제2조에 따른 소장 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구입할 미술 작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안권자는 작품수집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수집 작품 제안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안권자가 수집 작품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 충분한 조사·연구와 현장조사 등에 기초한 수집 작품 제안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서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서가 접수되면 작품추천과 관련된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 작품 목록에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추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6조(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소장 작품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 5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⑤ 추천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계유리나라 운영담당으로 한다.

**제6조의2(추천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추천위원회 회의)**

① 추천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해당 연도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연중 균형있게 분산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추천위원회의 작품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의 작품성, 가격 및 소장 필요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작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작품으로 확정된 작품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집추천 작품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수집추천서와 그 밖에 필요한 관계자료(도판, 사진, 작가 약력, 작품기증의향서 등)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작품수집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유리
2. 조각
3. 디자인
4. 공예
5. 미술평론가
6. 화랑 대표

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⑦ 심의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계유리나라 운영 담당으로 한다.

#### 제10조(심의위원회의 임무)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수집대상 작품의 수집 여부
2. 구입·기증 및 관리전환, 디자인 등록(공모) 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3. 작품의 불용결정
4. 그 밖에 작품수집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작품의 추천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작품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실 및 작품수집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때를 제외하고는 추천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⑥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작품 중 수집이 필요하다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작품에 한정하여 별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가격평가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대상 작품을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가격 및 구입여부를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 결정서



에 작성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가격을 필요한 경우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감정평가 등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의 추천된 작품 중에서 수집결정을 하되, 채점제와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

#### 제13조(위원수당)

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수집절차)

①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구입하기로 결정한 작품의 계약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작품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구매계약 체결 전에 작품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작품의 구입이 취소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구입 취소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취소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작품수집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수집 의결된 작품을 관련규정에 따라 재무관에게 구입을 요구하거나 기증 또는 관리전환 등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반 조치가 완료된 작품은 작품수집 담당부서장이 검수 후 영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작품수집 담당부서장은 작품 검수 과정에서 하자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하자 등의 보고가 있는 작품은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수집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5조(작품수집업무관련자 업무지침)

① 작품수집업무에 관련된 자는 작품수집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의 작품수집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품수집업무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추천위원회 위원
- 2. 심의위원회 위원
- 3. 그 밖에 작품수집업무 관련 공무원

**제16조(소장 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시장은 소장 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 작품 담당부서장을 소장 작품 관리관으로, 소장 작품 주무담당을 소장 작품 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② 소장 작품 관리관은 소장 작품의 관리·수리·복원·복제·출납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2.04>

③ 소장 작품 출납공무원은 소장 작품 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소장 작품의 관리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소장 작품의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장 작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 작품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을 소장 작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1. 제3조에 따라서 구입한 작품
- 2. 각종 전시회의 수상작품으로써 도계유리나라에 기증된 작품
- 3.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작가의 기증된 작품
- 4. 그 밖에 시장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작품

④ 소장작품 관리관은 소장 작품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장품등록 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작품대여의 대상 및 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도계유리나라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장 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 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제19조(대여 받은 자의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 허가를 받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여 작품 인수증을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작품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 촬영, 실측 기록, 포장 및 운반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대여 기간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대여 작품을 복제(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대여 받은 자는 도계유리나라에서 정하는 작품 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대여조건 및 대여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20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 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은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시장은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작품을 대여 받은 자는 즉시 작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탁 작품)**

- ① 도계유리나라는 전시 등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작품을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② 기탁대상작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유리(목공예) 또는 전시운용에 필요한 작품
  - 2. 예술성, 창작성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기증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작품
- ③ 기탁 작품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대여료를 기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기탁 작품의 관리 사항은 소장 작품 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기탁방법)**

-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사람(개인 및 단체포함)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미술작품 기탁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기탁을 수탁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 작품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탁 작품의 반환)**

- ① 기탁자가 기탁 작품의 반환신청을 할 때는 기탁 작품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작품기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상속인이 기탁 작품을 반

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탁기간의 연장)**

① 기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미술연구와 상설 및 기획전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 2. 장기적으로 도계유리나라 소장 작품으로 수집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기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탁자의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기탁기간은 반환신청이 있는 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작품기증)**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작품의 불용결정 등)**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는 그 작품을 불용결정할 수 있다.

② 불용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이 불용 결정한 작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작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 관람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9 - 124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18.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 50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0.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27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 50	20191018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지역위치 활용
2	강원도 삼척시 우지동 100	강원도 삼척시 우지길 122-22 (우지동)	20191018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기존도로명)

###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2건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27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 50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27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 5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273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 50	20191018		20090626	행정구역, 지역위치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우지동 100	강원도 삼척시 우지동 100	강원도 삼척시 우지길 122-22 (우지동)	강원도 삼척시 우지길 122-22 (우지동)	20191018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존도로명)	



삼척시 공고 제2019-884호

### 삼척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6일

## 삼 척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10. 16. ~ 2019. 11. 5.(21일)
2. 공고방법 : 삼척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
3. 공고내역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859,000원/㎡
4. 부과대상지역 : 하수처리구역 내
5.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켜 공공하수도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6.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환경부 고시 제2018-153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
7. 부담주체
  -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
8.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일)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

9. 납부시기

- 건축물(시설물)의 준공검사 전까지.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고지서에 의거 납부)

10. 시행일 : 2019년 11월 6일 예정 (공고일부터)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 단가 적용

11. 의견제출

- 본 공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을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19. 11. 5.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 편 : 삼척시 중앙로 296, 하수도사업소
- 팩 스 : 033-570-3192

○ 문 의 처 : 삼척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운영부서(033-570-3614), 오수관리부서(033-570-3617)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